

「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4. 6. 3. 개정 판 (시행 2024. 6. 3.) → 2026. 6. 29. 개정 판 (시행 2026. 6. 29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82/compare?from=1552&to=178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3:20:4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예산팀장,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,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-08-06>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0-08-06>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⑤ <삭제 2020-08-06>	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예산팀장,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,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-08-06>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0-08-06>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⑤ <삭제 2020-08-06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예산팀장,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,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⑤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